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2-0000호

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

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0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투자선도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가. 명 칭 :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

나. 위 치 : 경상북도 영천시 남부동 일원

다. 면 적 : 591,000㎡

2.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, 시행기간(변경)

가. 지정목적

-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직선도로 개설을 통해 영천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
-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민간투자 유치 흡인력 제고
-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

나. 지정 필요성

-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통해 영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함
-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
-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 필요

다. 시행기간 : (당초) 2017년~2022년 → (변경) 2017년~2023년

3.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4. 투자대상, 투자규모,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5.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6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7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안)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8.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(변경없음) : 게재 생략

9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(변경없음)

○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

10.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(054-880-3954) 및 영천시 미래전략실(054-330-6865)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.